

대전지방법원 2022. 6. 21 선고 2021나116345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재판경과

대전지방법원 2022. 6. 21 선고 2021나116345 판결

대전지방법원 2021. 7. 14 선고 2020가단143622 판결

전 문

원고, 피항소인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진

담당변호사 하동권

피고, 항소인B

변론 종결 2022. 5. 17.

판결 선고 2022. 6. 21.

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21. 7. 14. 선고 2020가단143622 판결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, 피고와 C 사이에 2018. 8. 14.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하고, 피고는 C에게 대전지방법원 2018. 8. 22. 접수 제6798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
2.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, 제1심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. 이에 이 법원이 적을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14행의 "연 25%"를 "연 24%"로, 제3면 아래에서 제3행의 "이를"을 "피고의 위 주장사실 및 원고가 C이 이 사건 증여행위를 한 무렵 위 증여행위에 의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는 점과 C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점까지 알았다는 사실을"로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,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판사윤이진

판사안영화

판사신순영